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39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다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가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

- 1)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, 5년 이상 모범적으로 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, 천재지변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
- 3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4)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, 벌금,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
- 5)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

라.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. 다만,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39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
가. 법 제10조의3제2항 또는 제10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1) 산업융합 신제품·서비스 사업 시행 후 1개월 내에 책임보험에 가입	법 제39조제1항제1호	300만원

<p>하거나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한 경우</p> <p>2) 산업융합 신제품·서비스 사업 시행 후 1개월부터 3개월 이내에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한 경우</p> <p>3) 산업융합 신제품·서비스 사업 시행 후 3개월부터 6개월 이내에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한 경우</p> <p>4) 산업융합 신제품·서비스 사업 시행 후 6개월이 지난 후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배상 방안을 마련한 경우 또는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한 사실이 없는 경우</p>		<p>500만원</p> <p>700만원</p> <p>1천만원</p>
<p>나. 법 제10조의4제7항을 위반하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용이 취소된 산업융합 신제품·서비스의 판매·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한 경우</p> <p>1) 1차 위반행위를 한 경우</p> <p>2) 2차 위반행위를 한 경우</p> <p>3) 3차 이상 위반행위를 한 경우</p>	<p>법 제39조제1항제2호</p>	<p>300만원</p> <p>600만원</p> <p>1천만원</p>
<p>다. 법 제10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임시허가가 취소된 산업융합 신제품·서비스의 판매·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한 경우</p> <p>1) 1차 위반행위를 한 경우</p> <p>2) 2차 위반행위를 한 경우</p> <p>3) 3차 이상 위반행위를 한 경우</p>	<p>법 제39조제1항제3호</p>	<p>300만원</p> <p>600만원</p> <p>1천만원</p>
<p>라. 법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적합성</p>	<p>법 제39조제1항제4호</p>	

<p>인증이 취소된 산업융합 신제품을 판매 또는 설치·운영한 경우</p> <p>1) 1차 위반행위를 한 경우</p> <p>2) 2차 위반행위를 한 경우</p> <p>3) 3차 이상 위반행위를 한 경우</p>		<p>300만원</p> <p>600만원</p> <p>1천만원</p>
<p>마. 법 제16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</p> <p>1) 산업융합 신제품 출고 후 1개월 내에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</p> <p>2) 산업융합 신제품 출고 후 1개월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</p> <p>3) 산업융합 신제품 출고 후 3개월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</p> <p>4) 산업융합 신제품 출고 후 6개월이 지난 후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경우</p>	<p>법 제39조제1항제5호</p>	<p>300만원</p> <p>500만원</p> <p>700만원</p> <p>1천만원</p>